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8. . . (제 회)	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8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등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국회 본회의 의결 2018.9.20. 일부개정, 2019.1.1. 시행)됨에 따라 변경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(제21조, 제31조)

- 1)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연구기간, 제조·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면제확인을 하지 않고,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법률 개정
- 2)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, 변경신청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

나.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의 위탁(제31조)

- 1)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가 아니라 환경

부가 해당 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므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법률 개정

2) 사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8. 10. 16. ~ 11. 26.)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“(화학물질의 등록면제)”를 “(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“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””을 “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”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”를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

나.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신고된 경우

다.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

라.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대상인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2항의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

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또는 변경신청
 제31조제1항제7호 중 “평가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
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”를 “평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를
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
 결과의 통지, 변경신청의 접수

제31조제4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4.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
 및 그 취소

[별표 6]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	법 제54조제1 항제1호	600	800	1,000
나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2호	600	800	1,000
다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3호	600	800	1,000
라.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 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4호	600	800	1,000
마.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5호			

1)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	600	800	1,000
2)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600	800	1,000
바. 법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·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6호	600	800	1,000

부 칙

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1조(화학물질의 등록면제) ①	<p><u>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“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<u>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(作用基)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제11조(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)	<p>① <u>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”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로서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<u>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</u></p> <p>나. <u>법 제10조제4항에 따라</u></p>	

<신 설>

<신 설>

7.·8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21조(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)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

2. ~ 11. (생 략)

제3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6. (생 략)

7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

신규화학물질로 신고된 경우

다.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

라.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대상인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2항의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

7.·8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) -----

-----.

1.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

2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성 평가, 같은 조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

7의2. ~ 21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

1의2.·1의3. (생략)

<신설>

2. ~ 3. (생략)

⑤ (생략)

- 평가

7의2. ~ 21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, 변경신청의 접수

1의2.·1의3. (현행과 같음)

1의4.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화학물질정책과	
연 락 처	044-201-6783